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2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이용우·김한정·홍정민

한정애 · 최혜영 · 오영환

정성호 · 김영배 · 박홍근

조응천 · 소병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 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각각 금산분리원칙을 지키 도록 한 것임.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없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대기 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할 것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업만을 영위할 것
- 3.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 만 할 것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
- ⑨ 제8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현황, 자금대차 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행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①~⑦(생략) <신설>	## 정 안 ## 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①~⑦(현행과 같음)⑧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있다. 1. 일반지주회사가 불행한 주식의총수를 소유할것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각호의 사업만을 영위할것 3.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출자로만할것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 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현 황,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